

예 산 총 칙

제 1 조 (총칙) 2018년도 영주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의 추정손익계산서,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현금흐름표는 다음과 같다.

가. 추정손익계산서

차 변		대 변	
비 용	순이익	수 익	순손실
8,664,569천원	1,391,787천원	10,056,356천원	0천원

나. 추정재무상태표

차 변	대 변	
자 산	부 채	자 본
90,146,452천원	2,737,526천원	87,408,926천원

다. 추정현금흐름표(자금계획서)

과 목	금 액
I.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	2,157,861천원
II.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	(12,757,274)천원
III.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	11,428,152천원
IV. 현금의 증감(I + II + III)	828,739천원
V. 기초의 현금	6,705,060천원
VI. 기말의 현금	7,533,799천원

제 2 조 (업무의 예정량) 업무의 예정량은 다음과 같다.

가. 급 수 전 수 : 23,668전

나. 년 간 생 산 량 : 15,739천^m

다. 1일 평균생산량 : 44천^m

라. 주요건설개량사업 : 북부권 상수도확장공사(통합)외14건 13,703백만원

제 8 조 (일시차입금)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861,000천원으로 정한다.

제 9 조 (예산전용 금지과목) 다음에 계기하는 과목의 경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다.

(1) 인 건 비 : 2,927,422천원 (2) 업무추진비(타 비목으로부터의 전용금지) : 9,300천원

제 10 조 (타 회계로부터의 보조금) 상수도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 및 타 회계로부터 이 공기업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15,724,000천원이다.

제 11 조 (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) 이익잉여금 없음

제 12 조 (중요자산취득 및 처분)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종 류	명 칭	수 량	금 액
		해 당 없 음		

제 13 조 (회전기금) 회전기금의 한도액 해당없음

2017. 12. 20.

영 주 시 장